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7. 10. 20.(목) / 총 5매(본문2, 참고3)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재평, 사무관 박성현, 주무관 최철민 • ☎ (044)201-3847, 3850, 3853
보 도 일 시		2017년 10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19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된다

승합차3.5톤 초과 화물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·차로이탈경고장치 필수

-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,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 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(국토교통부령)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0일 입법예고한다.
-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첫째, “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(17. 7. 28.)”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.
 - 비상자동제동장치(AEBS) 및 차로이탈경고장치(LDWS) 설치대상*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되,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시행시기*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.

* (현행) 길이 11m 초과 승합차,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·특수차

**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('19. 1. 1.), 그 외의 승합자동차 및 3.5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('21. 7. 1.)

○ 둘째,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*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**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고,

-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***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였다.

* (현행) 대형 화물·특수자동차, 밴형 화물자동차,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,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

** 후방영상장치,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, 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

*** (저소음자동차) 전동기로 주행이 가능한 동력발생장치를 가진 하이브리드 자동차, 전기자동차, 연료전지자동차 등

○ 셋째,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,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“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○ 또한 “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.”라고 덧붙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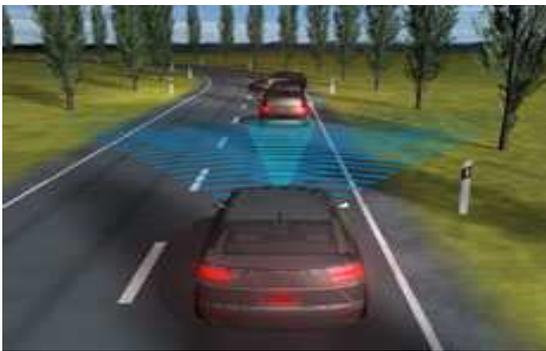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 자동차기술과 박성현 사무관(☎ 044-201-385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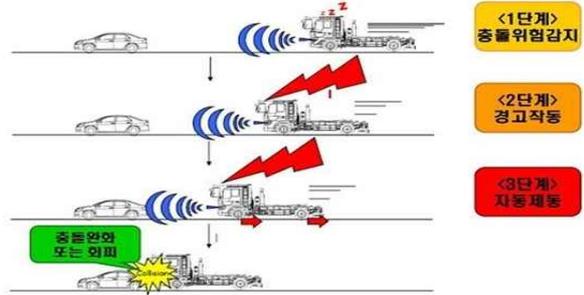
참고 1

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

- 비상자동제동장치(AEBS :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)
 - 주행차선의 전방에 주행 중이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자동으로 제동함으로써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
 - 위험상황에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최대감속도의 약 30%에 해당하는 제동을 제공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사고심각도 감소에 기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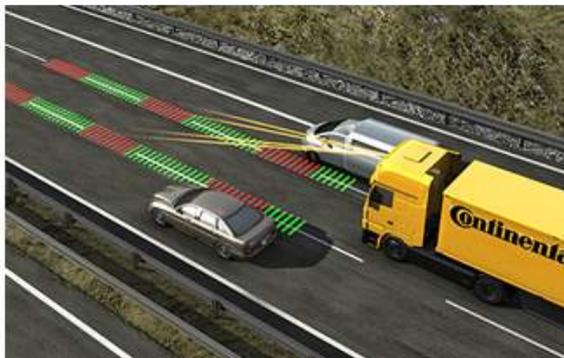
(a) 비상자동제동장치



(b)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원리

- 차로이탈경고장치(LDWS :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)

-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거나 운전을 하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차로를 이탈할 경우 카메라가 주행 차선을 인식하여,
-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밟으면 경보음이 울려 사고를 예방하도록 보조하는 장치



(a) 차로이탈 경보장치의 차선검출



(b) 차로이탈시 경고정보 제공

참고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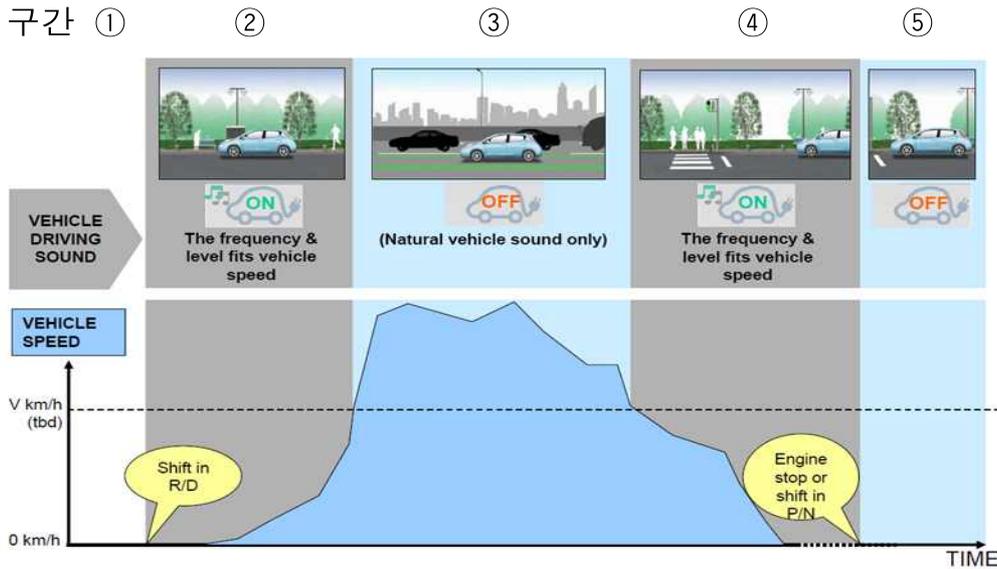
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및 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

□ 후방보행자 안전장치

후방보행자 안전장치	후방영상장치	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	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
작동사진			
주요기능	후방 관측봉 전부가 보일 수 있는 영상 장치	후진시 운전자에게 후방 보행자 접근상황 알림	후진시 보행자에게 후진중임을 알림

□ 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

○ 작동 개략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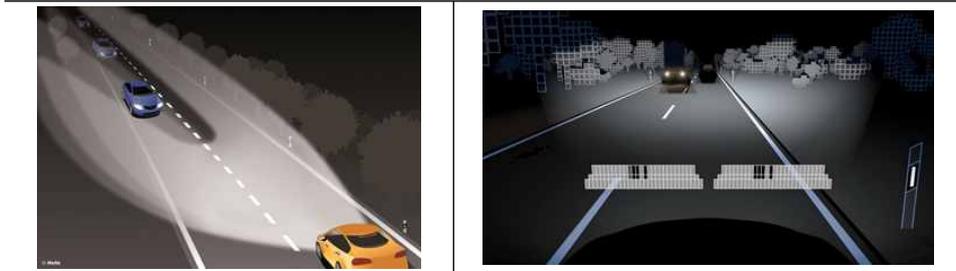
①	자동차가 신호대기 등으로 정차된 상태이며 경고음 발생 선택사항
②	자동차가 출발한 후 저속 주행하는 구간으로서 경고음 발생 의무
③	차속이 특정속도(20km/h)를 초과하는 구간으로서 경고음 발생 선택사항
④	차속이 특정속도(20km/h) 이하로 떨어져 저속 주행하는 구간으로써 경고음 발생 의무
⑤	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이며 경고음 발생은 선택사항

참고 3

신기술 적용 주요 등화장치 사례

□ 적응형 전조등(ADB : Adaptive Driving Beam)

- 대향차 운전자의 눈부심 감소 및 주행 운전자의 전방 인지거리 증가를 위해 자동으로 빛이 조절되는 전조등



□ 전조등 닦이기(Headlamp washing system)

- 고광량 전조등의 경우 렌즈 표면의 먼지로 인한 대향차 운전자의 눈부심과 주행 운전자의 전방시계 확보를 위한 장치



□ 순차점등 방향지시등

- 방향 전환시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등

